

#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  
개정 2013. 11. 15. 개정 2014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학칙 제34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책임과 권한)** ① 교육과정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3.1.>

1.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
2. 교육과정편성표 검토 및 심사의뢰
3. 교육과정 운영관리

② 교육과정 운영의 관련부서는 각 학부 및 학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과정편성표 작성
2. 교육과정 개편요청
3. 학부 및 학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 <개정 2013.7.1.>

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7.1.>

1.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개편사항 검토
2. 교육과정편성표 심의

**제4조(교육과정 편성원칙)**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3.7.1.>

1.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하며 학문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 학부 및 학과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편성한다.
2.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(80학점), 3년제(120학점), 4년제(136학점) 이상으로 하고, 총 개설학점은 졸업 학점의 2년제(92학점), 3년제(132학점), 4년제(148학점)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3.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교양교과, 교직교과, 전공교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3.7.1.>
  - 가. 교양교과(인성교육교과, 직업기초능력학습교과, 외국어교과, 창업교과) <개정 2013.11.15., 2014.3.1.>
  - 나. 교직교과(해당과) <개정 2013.11.15.>
  - 다. 전공교과(전공기초학습능력교과, 전공실무교과, 창업실습교과, 현장실습(CO-OP교과 포함)교과) <개정 2013.11.15., 2014.3.1.>

4. 교양교과는 인성교육교과, 직업기초능력학습교과, 외국어교과, 창업교과로 편성하며, 전공교과는 전공기초학습능력교과, 전공실무교과, 창업실습교과, 현장실습(CO-OP교과 포함)교과로 편성하며, 교과목은 해당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전에 교학처에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3.11.15., 2014.3.1.>

5. 전공교과는 2년제(56학점), 3년제(84학점), 4년제(100학점)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유치원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학부 및 학과 재학생 중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교직과목은 유아교육과에 한하여 전공교과에 포함한다. <개정 2013.7.1.>

6. 삭제 <2013.7.1.>

7. 과목당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양과목과 학부 및 학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1학점내지 2학점으로 개설 할 수 있다.

8. 삭제 <2013.7.1.>

9. 삭제 <2013.7.1.>

10. 교직교과는 2과목(4학점)으로 편성한다.

11. 학부 내 교양교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성한다.

12. 학점 당 시간 수는 이론과목의 경우 1학점 당 1시간, 실습과목의 경우 1학점 당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편성한다.

13. 교양과목은 본인의 학부(학과)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부(학과)장의 허가를 득하여 타 학부(학과)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14. 창업실습교과의 이수학점은 창업동아리 ‘창업실습’ 교과 인정기준(창업동아리)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수는 한 학기 3학점이하, 연간 6학점 이내로 편성한다. <신설 2014.3.1.>

15. 기타 편성원칙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. <개정 2013.7.1.>

[제4조 14호에서 이동 2014.3.1.]

**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** 교육과정의 편성·개편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7.1.>

1. 교육과정심의위원회 <개정 2013.7.1.>

가. 구성

1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3.1.>

2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3) 교학처장은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3.1.>

나. 기능

1)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심의

2) 교육과정운영계획의 검토

2. 삭제 <2013.7.1.>

**제6조(개편)** ① 전공교과과정은 학부 및 학과에서 발의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 <개정 2013.7.1.>

② 교양교과는 교양담당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교학처에서 발의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가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③ 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편 사유서와 신·구교과목 내용 대비표, 교과목 개요 및 교육과정 구성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개편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7조(교과이수)**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한다.

1. 교양교과 : 8학점 이상(2년제), 12학점 이상(3년제), 20학점 이상(4년제) <개정 2013.7.1.>

2. 전공교과 : 56학점 이상(2년제), 84학점 이상(3년제), 100학점 이상(4년제) <개정 2013.7.1.>

**제8조(일반선택과목)** 타 학부(학과)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타 학부(학과)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과이수)** ① 교육과정은 입학년도에 제정된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복학후의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, 휴학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이를 신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② 재입학생의 교과이수는 재입학한 후의 교과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재입학전에 이수한 과목은 이를 재입학후의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**제10조(교과목 코드)** 교과목 코드는 7단위로 다음에 의거 부여한다.

1. 교과목 코드는 교과목의 한글 자모순(가, 나, 다, 라, ...)에 의하여 부여한다.

2. 교과목의 신설 시는 현 교과목 일련번호의 끝에 추가시킨다.

3. 교과목 코드의 부여는 신규편성 또는 신설시 교학처에서 부여하여 관련학과 (학부)에 통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**제11조(해외어학연수)** 1. 해외어학연수 참가학생은 횟수에 상관없이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은 교양6학점, 성적평가는 S(Success)/U(Unsuccess)로 처리한다.

<개정 2013.7.1.>

2. 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하며 해외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을 인정받기 원하는 학생은 연수종료 10일 이내에 교학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